

평창군도시계획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2003년 6월 20일
조례심사특별위원회

1. 심 사 경 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3. 6. 10(화) 평창군수(지역도시과장)
- 나. 회부일자 : 2003년 6. 20(금)
- 다. 상정일자 : 제103회 평창군의회 정례회
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(2003. 6. 20)상정·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지역도시과장 박현창)

가. 제안이유

-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2003년 1월 1일자로 제정 시행됨에 따라 동법 시행령,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법령의 허용범위 내에서 규정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골자

- 조례의 제정목적 및 기본방향을 규정함.
- 군기본계획(공청회방법 및 자문)에 관하여 규정함.
- 군관리계획 입안시 주민의견 청취 및 공람사항등에 관하여 규정함.
- 개발행위허가(경미한 사항, 개발행위허가 기준, 조건부허가,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심의회 자문등)에 관하여 규정함.
- 지역·지구·구역 안에서의 제한을 규정함.
- 군계획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.
- 군계획상임기획단에 관하여 규정함.
-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 등에 관하여 규정함.

3.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의 요지

(전문위원 박태영)

-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을 살펴보면,
 -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은 법률 제6655호로 2002년 2월 4일 새로운 법으로 탄생하였고 동년 12월 26일 대통령령 제17816호로 동법시행령이 제정 공포되어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.
 - 동 법률과 시행령에는 군기본계획 · 군관리계획 · 지구단위계획등의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
- 먼저 조례심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용어를 살펴보면,
 - 군기본계획 :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상위개념으로 보면 됨.
군의 관할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써 도시관리계획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.
 - 군관리계획 : 군의 개발 · 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이용 · 교통 · 환경 · 경관 · 안전 · 산업 · 정보통신 · 보건 · 후생 · 문화등에 관한 세부계획.
 - 지구단위계획 : 도시계획 수립대상 지역안의 일부에 대하여 체계적 ·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계획수립운동은 규칙으로 정합니다.
 - 공동구 : 지하매설물(전기 · 가스 · 수도 · 통신시설 · 하수시설등)을 말합니다.
- 본 조례안은 위임된 범위 내에서 평창군 실정에 맞게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,
 - 조례안 중 변경이나 규제가 되는 내용은 지구단위 계획중의 경미한 변경사항 15개항목,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7개구역, 개발행위의 허가중 허가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6가지 행위등이며 이는 전체적으로 상위법령에 정한 상한선으로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.

- 이는 주민의 편익이 지역개발의 공익의 요건을 고려한 것으로 분석되 있습니다.

○ 본 조례의 시행의 시급성(2003.7.1.시행예정)을 고려하여 조례는 제정시행을 하되 아래사항은 보완하여 조속히 개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.

제정안	이유
제12조(공동구의 점용료·사용료) 법 제4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이를 따로 정한다.	○법 제44조를 보면 공동구를 점용사용하는 자는 당해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. 따라서 당연히 조례로 규정하여야 함.
제13조(공동구의 관리비용 등) 영 제39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구의 관리비용·관리방법·공동구관리협의회의 구성운영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.	○영 제39조를 보면 공동구의 관리비용·관리방법·공동구관리협의회의구성·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의 도시계획조례로 정한다.라고 규정하고 있음. 따라서 조례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.

○ 입법형식상 문제점에 대하여 수정안을 제시합니다.

제정안	수정안
제5조(군기본계획공청회개최방법) ②----- <u>시행령</u> 제12조-----	제5조(군기본계획공청회개최방법) ②----- <u>령</u> 제12조-----
제10조(지구단위계획중 경미한 변경사항) ----- <u>공동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.</u>	제10조(지구단위계획중 경미한 변경사항) ----- <u>공동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다.</u>
2. ----- <u>면적의 10분의 1이내</u>	2. ----- <u>면적의 10퍼센트 이내의 경우</u>
3. ----- <u>10분의 3이내의 변경</u>	3. ----- <u>30퍼센트이내의 변경인 경우</u>
4. ----- <u>10분의 2이내의 변경</u>	4. ----- <u>20퍼센트 이내의 변경인 경우</u>
5. ----- <u>조성계획의 변경</u>	5. ----- <u>조성계획의 변경인 경우</u>
제77조(시행규칙)----- <u>조례</u> <u>시행규칙으로 정한다.</u>	제77조(시행규칙)----- <u>규칙</u> 으로 정한다.

제정안	수정안
<p>【별표1-24】 <u>우리군 조례에 의하여-----</u> (24개 삭제)</p>	<p>【별표1-24】 <u>조례에 의하여-----</u> (24개 삭제)</p>
<p>【별표7-23】 -----경계로부터 10m이내----- (8개 수정)</p>	<p>【별표7-23】 -----경계로부터 10미터이내 (8개 수정)</p>
<p>【별표24】 가. -----경계로부터 30m이내----- 바. -----경계로부터 30m이내-----</p>	<p>【별표24】 가. -----경계로부터 10미터이내----- 바. -----경계로부터 50미터-----</p>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없음.

5. 토론요지 :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내용처럼 입법절차의 형식에 맞게 수정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됨.

6. 심사결과 : 수정가결

7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붙임 : 평창군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1부.

평창군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제안년월일 : 2003년 6월 20일

제안자 : 조례심사특별위원회

1. 수정이유

- 입법의 형식 또는 자구등의 문제점이 발견되어 올바른 입법형식의 정립을 위해 바로잡고, 상위법에 위배되는 조문을 상위법에 맞게 고치기 위함.

2. 수정주요골자

- 안 제5조2항중 “시행령”을 “령”으로 수정.
- 안 제10조중 “공동심의틀 생략할 수 있다”를 “공동심의틀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다”로 수정.(상위법 불일치)
- 안 제10조2호중 “면적의 10분의 1이내”를 “면적의 10퍼센트 이내의 경우”로, 안 제10조3호중 “10분의 3이내의 변경”을 “30퍼센트이내의 변경인 경우”로, 안 제10조4호중 “10분의 2이내의 변경”을 “20퍼센트 이내의 변경인 경우”로, 안 제10조5호중 “조성계획의 변경”을 조성계획의 변경인 경우“로 수정.
- 안 77조중 “조례시행규칙”을 “규칙”으로 수정.
- 【별표 1-24】 중 “우리군 조례”를 “조례”로 수정. (24개 삭제)
- 【별표 7-23】 중 “10m”를 “10미터”로 수정. (8개 삭제)
- 【별표 24】 중 “30m”를 “30미터”로, “50m”을 “50미터”로 수정.

평창군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평창군도시계획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5조제2항중 “시행령”을 “영”으로 하고, 안 제10조중 “공동심의를 생략 수 있다”를 “공동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다”로 한다.

안 제10조제2호중 “면적의 10분의 1이내”를 “면적의 10퍼센트 이내의 경우”로 하고, 동조제3호중 “10분의 3이내의 변경”을 “30퍼센트 이내의 변경인 경우”하고 동조제4호중 “10분의 2이내의 변경”을 “20퍼센트 이내의 변경인 경우”로 한다.

안 제77조중 “조례시행규칙”을 “규칙”으로 한다.

【별표 1】 내지 【별표 24】 중 “우리군 조례”를 “조례”로 하고

【별표 7】 내지 【별표 23】 중 “10m”를 “10미터”로 하며

【별표 24】 중 “30m”를 “30미터”로, “50m”을 “50미터”로 한다.

수정안대비표

원안	수정안
제5조(군기본계획공청회개최방법) ②----- <u>시행령</u> 제12조-----	제5조(군기본계획공청회개최방법) ②----- <u>령</u> 제12조-----
제10조(지구단위계획중 경미한 변경사항) ----- <u>공동심의를 생략할 수</u> <u>있다.</u>	제10조(지구단위계획중 경미한 변경사항) ----- <u>공동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</u> <u>경할 수 있다.</u>
2. ----- <u>면적의 10분의 1이내</u>	2. ----- <u>면적의 10퍼센트 이내의 경우</u>
3. ----- <u>10분의 3이내의 변경</u>	3. ----- <u>30퍼센트이내의 변경인 경우</u>
4. ----- <u>10분의 2이내의 변경</u>	4. ----- <u>20퍼센트 이내의 변경인 경우</u>
5. ----- <u>조성계획의 변경</u>	5. ----- <u>조성계획의 변경인 경우</u>
제77조(시행규칙)----- <u>조례</u> <u>시행규칙</u> 으로 정한다.	제77조(시행규칙)----- <u>규칙</u> 으로 정한다.

별표 수정안

개정안	수정안
<p>【별표1-24】 <u>우리군 조례에 의하여</u>----- (24개 삭제)</p> <p>【별표7-23】 -----경계로부터 10m이내----- (8개 수정)</p> <p>【별표24】 가. -----경계로부터 30m이내----- 바. -----경계로부터 30m이내-----</p>	<p>【별표1-24】 <u>조례에 의하여</u>----- (24개 삭제)</p> <p>【별표7-23】 -----경계로부터 10미터이내----- (8개 수정)</p> <p>【별표24】 가. -----경계로부터 10미터이내----- 바. -----경계로부터 50미터-----</p>